

의안번호	2213402
의 퇴 인	안도걸 의원
회 답 일	2025. 10. 30.
추 계 번호	25F5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6년 연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27년 0.1억 원 2036년 0.05억 원 등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총 10년간 2.3억 원(연평균 0.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감면규정은 5년간 적용되므로, 2031년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세수효과는 최대 2036년까지 발생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36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6년 연장(안 제121조의2제1항)	-0.1	-0.2	-0.3	-0.3	-0.4	-0.4
	2033	2034	2035	2036	누적	연평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6년 연장(안 제121조의2제1항)	-0.3	-0.2	-0.1	-0.05	-2.3	-0.2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1조의20제1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 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6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1.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1조의20제1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 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 세수효과는 신고 및 납부시기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은 5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2년까지 발생
- (안 제121조의20제1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1~2025년 감면액의 평균치를 신규 입주기업 등의 감면 발생액으로 가정한 후, 신규 입주기업의 감면 발생액이 매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2021~2025년(잠정) 평균 감면실적: 0.4억원

- 신규 입주기업 연간 감면액(100% 감면) = 0.4억 원 × 1/4 = 약 0.1억 원
 - 3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4로 나누어 환산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감면기간 및 감면율: 3년 100%+2년 50%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개정안) 2031.12.31.
- (감면실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실적은 2021년 0.1억 원, 2026년 0.3억 원 수준

[표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및 전망: 2021~2026년
(단위: 억 원)

	2021	2022	2023	2024	2025(잠정)	2026(전망)
합계	0.1	1	0	0.5	0.3	0.3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나. 추계방법 및 추계결과

- (추계방법)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1~2025년 감면액의 평균치를 신규 입주기업 등의 감면 발생액으로 가정한 후, 신규 입주기업의 감면 발생액이 매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
 - 2021~2025년(잠정) 평균 감면실적: 0.4억원
 - 신규 입주기업 연간 감면액(100% 감면) = 0.4억 원 × 1/4 = 약 0.1억 원
 - 3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4로 나누어 환산
 - 신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발생액이 매년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할 경우, 향후 감면액은 다음과 같이 추계
 - 신고기준에 따라 t년도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세액감면 세수효과는 t+1~t+5년에 걸쳐 발생

[표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액 추계: 2027~2036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6년 입주기업	0.1	0.1	0.1	0.05	0.05
'27년 입주기업		0.1	0.1	0.1	0.05
'28년 입주기업			0.1	0.1	0.1
'29년 입주기업				0.1	0.1
'30년 입주기업					0.1
'31년 입주기업					
	2032	2033	2034	2035	2036
'26년 입주기업					
'27년 입주기업	0.05				
'28년 입주기업	0.05	0.05			
'29년 입주기업	0.1	0.05	0.05		
'30년 입주기업	0.1	0.1	0.05	0.05	
'31년 입주기업	0.1	0.1	0.1	0.05	0.05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27년 0.1억 원 2036년 0.05억 원 등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총 10년간 2.3억 원(연평균 0.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의 세액감면이 5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6년까지 발생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36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6년 연장(안 제121조의2제1항)	-0.1	-0.2	-0.3	-0.3	-0.4	-0.4
	2033	2034	2035	2036	누적	연평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6년 연장(안 제121조의2제1항)	-0.3	-0.2	-0.1	-0.05	-2.3	-0.2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